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구성 (안 제2조, 안 제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4조의2)
- 위원의 해촉 (안 제4조의3)
-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민기)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법(2015.8.11.개정) 및 영(2016.2.12.개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가 영 제37조에서 법 제34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조)
-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토록 변경하며(안 제3조제2항)
- 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관련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일정 통지, 서면 의견 진술 등 규정을 보완하였음. (안 제10조제1항·제2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2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위 원 : 처리주무부서 장, 관계부서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촉된 자

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다.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라. 서면 제출을 통한 의견청취 방법 보완(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6.9.22 ~ 2016.10.12.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담당관
4.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민원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붙임”을 “부칙”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업무담당팀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u>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u>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u></p> <p>2. <u>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u></p> <p>3. <u>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u></p> <p>4. <u>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조례</u></p> <p>제1조(목적)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34조-----</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u>-----</p> <p>-----.</p> <p>제2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소관국장이 된다.

〈삭제〉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할 때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신설〉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담당관
4.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삭제〉

〈삭제〉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

〈신 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 ③

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민원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제2항-----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붙일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고충민원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이 관련된 구분청 국장, 보건소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④ -----

----- 부칠 -----
-----.

제9조(간사) ① -----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삭제〉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